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기본서 2022년 초판 정오표

(2022년 1월 10일 발행)_2022.7.19

p113. ② 과징금. ㉠ 일부 수정, ㉣ 내용 전체 교체

수정 전	수정 후
② 과징금(법 제18조) 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,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1/2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㉢ 국토교통부장관은 **~~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~~**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,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㉣ **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** ㉤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**~~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~~** ㉥ 생략	② 과징금(법 제18조) 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,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1/2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,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㉣ **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** ㉤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㉥ 생략

p113. 하단 '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액' [별표 1] 개정으로 내용 수정

[수정 전]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 제2호	-	300만원	400만원
2. 법 제7조 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. 다만,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렇지 않다.	법 제17조 제1항 제3호	-	300만원	600만원
3.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 제5호	-	300만원	400만원
4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(再開)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 제1항 제6호	-	600만원	-

[수정 후]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액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1.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 제2호	-	1,500만원	2,000만원	2,000만원
2. 법 제7조 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. 다만,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렇지 않다.	법 제17조 제1항 제3호	-	1,500만원	3,000만원	-
3.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 제5호	-	1,500만원	2,000만원	2,000만원
4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(再開)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 제1항 제6호	-	3,000만원	-	-